

1952년 2월 29일 제13회 중의원 행정감찰특별위원회

○ 일시: 1952년 2월 29일(금) 오전 10시 56분 개의

○ 발언자:

- 하라 조에이(原長栄) 증인(니가타지방검찰청 차석검사)
- 와타나베 겐지로(渡辺健次郎) 증인(경시청 방범부장)
- 노모토 요키오(野元与喜雄) 증인(신주쿠 카페협동조합 이사장)
- 시이쿠마 사부로(椎熊三郎) 중의원 부의장(중의원 제국헌법개정안위원회 위원)
- 야마구치 다케히데(山口武秀) 의원(공산당 소속 중의원 의원, 농민운동가)
- 사타케 신이치(佐竹新市) 의원(일본사회당 소속 중의원 의원, 히로시마현회 의원)

○ URL: <https://kokkai.ndl.go.jp/#/detail?minId=101304280X01119520229&spkNum=61¤t=2>

○ 해제(개요 및 특징)

패전 이후 일본에 진주한 미군에 대해서도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안부가 있었고 이에 대해 일본 당국도 협조했다는 사실을 검사는 직접적으로, 업자는 간접적으로 증언하고 있음. 이에 비해 당시 매춘을 단속하던 경시청의 간부는 이런 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음. 질의 의원들은 군위안부의 반인권적 성격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고, 흥미롭게도 이에 대한 당시 남한 주민들의 거센 반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음.

○ 주요 내용 번역

- ▷ 시이쿠마 위원 “증인에게 여쭙고자 합니다. 도쿄도(東京都) 내에 십수 개소에 걸쳐서 아카센(赤線)구역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하나의 전형처럼 되어 있습니다. 시범 지구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지요. 신헌법에 의해 종래의 가시자시키(貸座敷)²⁾ 영업은 금지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 경

1) 아카센구역(赤線区域) : GHQ가 내린 「폐창령」과 1956년에 제정된 「매춘방지법」으로 공창제는 명목상 폐지되었으나, 폐창령이 내려진 이후 매춘방지법이 시행된 1958년까지 ‘특수음식점가’라는 이름으로 매춘이 공공연히 행해지던 지역을 말한다. 경찰의 풍속 영업 허가를 받은 아카센, 보건소의 식품위생법 허가만으로 영업을 하며 밀매춘을 하는 아오센(靑線), 예기(芸妓)를 두는 2업지(二業地)·3업지(三業地), 미군기지 주변 등 패전 이래 전국에 창부 집중 지역이 증가해서 성풍속 산업은 그 규모가 확대된다.

2) 가시자시키(貸座敷) : 인신매매 금지가 명확히 언급된 1872년의 「창기해방령」 직후에 「가시자시키·창기규칙」에 의해 인신매매는 금지하지만 ‘자유의회’에 기초한 영업은 용

찰 당국과 업자(業者) 간에는 모종의 약속이 있어서 진주군(進駐軍)이 있는 동안은 예전과 같은 그런 영업은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형태를 바꿔 특수음식점 같은 곳으로 하고, 그 실태는 예전처럼 가시자시키 영업을 하더라도 묵인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업자와 경찰 간에 약속이 있어서, 이런 것이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 ▷ 하라 증인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창(公娼)이 폐지되어 구(舊) 가시자시키 업자가 거리를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진주군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위안부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서, 다시 예전의 업자를 급히 모아 위안부를 제공하면서 당국으로서도 상당한 도움을 주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신의 구속을 동반하는 업태(業態)가 아니라면 상관없지 않은가, 그래서 방을 빌려주는 것이다, 다음은 여자의 자유의사로 손님을 받는 것이다, 자신은 방값만 받는다, 매음은 본인의 결정이라는 편리한 해석을 하고, 그렇다면 위법이 아니지 않나 하며, ‘특수’라는 글자를 덧씌워 찻집(喫茶店) 혹은 카페라는 이름으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중략)

- ▷ 시이쿠마 위원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해주셔서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아카센구역의 존치 이유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창 폐지 때문에, 그런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생활에 극심한 곤란을 겪을 수 있기에, 우선 사회 정책적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구제한다는 의미에서 일시적으로 묵과하고 있었다는 점이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진주군이 들어와서 여러 방면으로 그런 요구가 있다고 한다면, 사회질서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일단 해방시켰던 공창이라도 다시 불러 모아 그러한 곳에서 그것을 처리해주려는, 점령당한 일본의 불행한 운명에서 온 실태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이렇게 두 가지 이유로 해석됩니다. 더구나 이후 그것이 점차 광범위하게 발전해 온 과정에서는, 직접 그 행동을 단속하는 법규가 없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그래서 거듭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카센구역 내에 출입하는 남자는 일본인이 많습니까, 아니면 진주군 병력이 많습니까? 그 비율은 어떻습니까?”

- ▷ 하라 증인 “저도 그쪽은 잘 모릅니다만, 아시다시피 진주군은 고급 광광³⁾을 이

인한다는 명분이 성립되었다. 일본 정부는 인신구속을 받았던 에도시대의 유녀(遊女)와 달리 근대 공창제 하의 창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을 맺거나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방을 빌려주는 곳’이라는 뜻인 가시자시키도 창기 본인의 선택을 강조한 신조어다.

- 3) 광광(パンパン) : 패전 직후부터 일본 정부는 점령군 전용의 성적 위안 시설(Recreation and Amusement Association, RAA)을 설치하라고 전국에 촉구했고, 점령 두세 달 만에 최대 7만 명의 여성들이 그곳에서 일했다. 미군 병사들 사이에서 성병이 만연하자 GHQ는 1946년 1월 21일에 「공창 폐지에 관한 각서」를 발표했고, 이에 일본 정부는 「창기단속규칙」을 폐지한다. RAA가 폐쇄되자 일방적으로 해고된 여성들이 가두에 넘쳐나 이른바 ‘광광’이라 불리는 가창(街娼)이 급증했다.

용하고 있어서, 아카센구역 쪽은 대부분 일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시이쿠마 위원 “그런데 광광 쪽은 경시청의 단속 대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아카센 구역은 대부분 일본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카센구역의 존치 이유 가운데 하나인 진주군이 들어왔기 때문에 위안부가 존재한다는 의미는 사라졌다고 봅니다. 더구나 공창이 폐지되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생활이 곤란해질 수도 있다는 온정적인 느낌도, 앞서 나왔던 증언대로라면 한 달에 10여만 엔 이상의 고수입을 올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부모 앞으로 송금도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다면 정말로 생활이 어렵고 먹고살기 힘들어 잠시 허용해준다는 목적 그 자체도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요. 진주군을 상대로는 거의 이용자가 없는 형편이고, 곤궁한 사람을 돕는다는 사정에서는 너무나 현실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것이 도쿄에 심수 개소가 있는 아카센구역을 모델로 하여 점점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은 일본의 사회제도나 질서, 도의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놀랄만한 일이지요.”

(중략)

- ▷ 야마구치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칙령 제9호⁴⁾에 따라 당초에는 단속이 꽤 잘 이루어졌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후 아카센구역이 생긴 것은 진주군을 상대할 위안부 제공이라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만, 일본이 포츠담선언을 수락하여 항복했다 하더라도, 미군에 대해 일본 부녀자에게 매음을 제공토록 하는 이러한 어리석고 굴욕적인, 게다가 비인간적인 약속을 했을 리는 없습니다. 당연히 거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본이 거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메이지(明治) 시대 창부(娼婦)의 사례를 보더라도, 옛날의 창부조차도 ‘미국에게는 소매조차 적시지 않는다’⁵⁾ 같은 노래를 불러 민족적 기개를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본에서 종전 후 매창(賣娼) 재흥(再興)의 단초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법규상 역시

4) 칙령은 일본 구 헌법에서 천황이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내리는 명령을 말한다. 칙령 제9호는 1947년 1월 14일 포츠담 선언의 수락에 따라 일본 내무대신에 의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포되었다.

제1조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지 않고 부녀를 곤혹시켜 매음을 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조 부녀에게 매음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계약을 한 자는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 제2조의 미수죄는 벌한다.

5) 원래는 메이지유신 초기에 어느 창부(娼婦)의 마지막 노래 구절인 “내리는 비에도 소매는 적시지 않는다(ふるあめりに袖はぬらさじ)”, 즉 옷소매를 털어내면서 그 정절(貞節)을 지켜낸 기백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구절이 “アメリカに袖はぬらさず”, 즉 “일본의 유녀(遊女)는 미국인에게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로 바뀌어 전해진 것 같다. 원래의 스토리는 1970년에 아리요시 사와코(有吉佐和子)가 단편소설로 발표했고 이후 직접 희곡화했으며, 현재도 가부키 등으로 공연되고 있다.

어쩔 수 없었던 것일까요. 이 점 알고 계십니까?”

- ▷ 하라 증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쿄에 있지 않아서 도쿄에서 있었던 사례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포츠담선언과 같은 명백한 근거에 의해서 내놓으라든가, 내놓지 않겠다든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상대가 실력(實力)으로 경찰서장 등에게 요구하는 실정이어서, 당시 관헌으로서는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중략)

- ▷ 야마구치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관계자에게 들어보도록 합시다. 더 묻고 싶은 것은 아카센구역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아카센구역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카센구역의 내용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 ▷ 야마구치 위원 “(전략) 다음으로 여쭙고자 하는 것은 경시청 관내에서 미군이 진주한 이래 미군으로부터 위안부 제공을 요구받은 적이 있는지에 관해서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 ▷ 와타나베 증인 “저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 ▷ 야마구치 위원 “이는 극히 유감스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경시청의 방범부장으로 계신 분이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예컨대 남조선에 미군이 진주했을 때 미군을 상대로 매춘을 한 여자를 향해 남조선 사람 전부가 돌을 던졌고, 민족적 굴욕이라며 이를 규탄했습니다. 조선에서도 이처럼 조선 민족 자체가 이 문제에 중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전 니가타현(新潟県)의 차석검사 말을 들어보아도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명료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경시청 방범부장이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하니 정말 해괴하기 짝이 없군요. 하지만 해괴하기 짝이 없는 일을 가지고 당신을 이 자리에서 크게 책망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실정이었다는 것이 분명해졌으니, 그건 그것으로 됐습니다.”

(중략)

- ▷ 사타케 위원 “그럼 증인에게 물겠습니다. 사쓰키 위원장에 대한 증언 가운데 배분의 문제입니다. 그 배분 문제에 관해서 당신은 100분의 50을 증언하셨습니다만, 100분의 50이라는 것이 업자별로 다른가요? 또한 귀하의 신주쿠카페협동조합에서 뭔가 그러한 규정이 만들어져 있는 것인지 궁금하군요.”

- ▷ 노모토 증인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만, 신주쿠(新宿)에서는 1946년 1월 12일 공창이 폐지될 때⁶⁾ 보안부장 명령으로 지시가 있어서 지금까지의 가시자시키에 대해서는, 그곳에서 일하는 창기가 접대부로 일하는 것을 묵인해주었습니다. 그

러나 그 몫은, 지금 말씀드린 100분의 50 이상을 접대부에게 주고 업주는 100분의 50 이하로 한다는 지시가 있어서, 그대로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사타케 위원 “100분의 50이라는 것은 이른바 유곽제도가 폐지되고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가 금지되고 난 뒤에, 이번에는 위안부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위안부의 수입 가운데 100분의 50은 경시청 보안부장이 인정한 것입니까?”

▷ 노모토 증인 “예”

(중략)

▷ 사타케 위원 “당신의 신주쿠카페협동조합이 이른바 매음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제가 듣고 싶은 것은, 1946년에 경시청 쪽에서 이른바 위안부로 인정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하십니까?”

▷ 노모토 증인 “저로서는 당시 경시청에서, 물론 매음은 괜찮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설령 어떤 물품이 나오더라도 그 후에 여성과 오는 손님이 어떤 분위기에서, 물론 여기서 일하는 여성 대부분은 전재(戰災)와 전쟁에 의한 미망인이랄까, 그밖에 곤궁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성과 어떤 약속을 주고받는 사이인지에 관해서는 아직 확실히 들은 바가 없습니다. 어찌 됐든 희사(喜捨)를 받기 때문에, 그 돈의 100분의 50 이하를 받는,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에 해당하는 듯합니다.”

6) 원래 1월 21일이 맞다. 원문에 1월 12로 나와 있으나 GHQ는 1946년 1월 21일에 「공창 폐지에 관한 각서」를 발표했다.